

국민편익 위해 警察搜查權 반드시 필요

—— 김 충 남 (경찰학 박사, 관동대 법정대 학장)

최근 검찰과 경찰간의 첨예한 이슈는 아무래도 수사권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9년 사법개혁논의에서 핵심사안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양자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일반국민들에겐 상호 험거투기 현상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역시 뚜렷한 해결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기능분담은 단일의 기준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부처의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민주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 제공이 주요한 임무인 부처의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관장기능의 범위결정에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강제력을 보유한 부처의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못지않게 강제력 행사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분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편익일 것이다. 정부의 존립 자체가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편익의 증진은 모든 정부 부처가 특정의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문제도 양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이라는 기준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검찰 또는 경찰이 주장하는 어떠한 논리도 국민편익의 증진이라는 잣대에서 비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수사에 대한 경찰의 독점체제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수사업무가 본래적으로 법의 강제적 집행을 그 특성으로 하는 바, 잘못하면 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과장치가 부재하는 수사권의 독점행사는 자칫 잘못된 권한행사를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절차를 두게 되면, 그러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편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실제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경찰이 맡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사업무를 현실적으

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능수행에 경찰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사를 경험한 다수의 국민들이 수사업무의 관장 부처가 경찰이라는 인식을 높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명분이 상이

하게 규정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실제 수행자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뿐더러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한편, 경찰 수사권의 독립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일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게 될 경우 국민의 인권을 현저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이다. 이는 아마도 인력의 역량측면에서 검찰에 비하여 경찰이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인력의 역량측면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전담이 국민의 인권침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동안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합격자, 경찰대학, 일반대학의 법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간부후보생 등 고급인력의 충원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왔고, 향후에도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법학 전공자를 수사요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인력만으로도 실제적으로 경찰에 부여된 수사권을 무리 없이 행사하여 왔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민인권의 보호라는 잣대를 적용할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특별히 무리한 주장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司試出身 특채 경쟁률 10대 1

- 간부후보생 응시율도 47대 1 기록 -

최근 사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경찰 특채 모집 결과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금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응시율 역시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해마다 우수자원 및 고학력자들의 경찰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특채 모집 결과 5명 모집에 52명이 응시해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간부후보생은 50명 모집에 2,330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매년 고시출신자들을 비롯한 우수자원

地方選舉 불법행위 단속강화

- 경찰청, 전국 지방청 수사·정보과장 회의 개최 -

경찰청은 오는 5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선거사범은 물론 당비대납, 당원불법 가입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남에 따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정보과장 회의와 수사2계장 회의를 연속으로 갖고 탈·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단속한다는 방침 하에 ①금품·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행위 ②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 ③차단체장·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④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행위 ⑤선거폭력 및 선거질서 교란행위 등을 「5대 선거사범」으로

선정,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당비대납, 유령당원 가입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2,258명), 기동수사팀(143명), 전문 사이버 수사요원(700여명) 등 총 3,00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 금품·향응제공, 현수막 설치, 각급단체의 찬조금품 요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인근 경찰관서간 「교차단속」과 함께 선거분위기 과열지구에는 기동수사팀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전문 사이버순찰요원을 지정, 출마예상자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24시간 사이버 순찰

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경찰관서와 선관위간 Hot-Line을 구성하고 「현장합동조사팀」을 편성, 불법행위자 현장검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검거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특진시켜 일선 단속경찰관의 단속의지를 높이고 지방선거 및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고질적인 금품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에서 신고액의 최고 1백배까지 보상을 지급하고, 선거와 관련된 입당강요·당비대납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6년도 경찰 승진시험이 지난 1월 22일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번 승진시험은 총 3,309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14,725명이 응시하여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이번 승진시험의 결과는 지난 1월 27일 발표되었다. (업무 틈틈이 갖고 뒀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응시생들)

경찰서간 사건이송 검사지휘 폐지

- 검사 지휘 고소·고발사건, 경찰 수사기간 연장 -

경찰서간 사건 이송에 대한 검사의 지휘 제도가 폐지되었다

검찰은 작년 5월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합의권고안 19개 항목 중 사건이송에 대한 검찰지휘 폐지, 검사가 지휘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기간 연장(1개월→2개월) 등 2개 항목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발송함으로써 사건 이송에 대한 검사 지휘가 폐지되고 수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사건발생시 경찰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할 '주요사건' 대상도 종전 22개 항목에서 내란·외환·공안·살인·선거법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으로 줄이도록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검찰은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에 대한 검사의 지휘체도를 폐지하는 한편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및 고학력 출신자들의 경찰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경찰에 대한 높은 긍정적 이미지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의 여파로 안정적 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엔 응시한 고시출신 특채자 최종 발표는 3월 9일 있을 예정이며, 간부후보생 시험 응시자들 역시 2월 19일 필기시험인 제 1차 및 2차 시험을 시작으로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와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4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우범지역 巡察 우리가 맡는다

서울동부署 구의 2동 자율방범 순찰대



서울 동부서 관나루 지구대 구의 2동 자율방범 순찰대가 각종 범죄예방에 앞장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애에 종사하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서도 주 2회의 정기순찰과 병행해 시간 날때마다 틈틈이 순찰을 도는 대

원들은 관내 우범지역은 물론 취약지역을 샅샅이 뒤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채택식 회원은 『부족한 경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1면에 이어>

특히, 현장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95년에는 자신의 인생회고록인 「어느 경무관 아버지와 운동권 딸의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펴내 화제를 뿌리기도 했는데, 당시 이 책은 「베스트 셀러 10」에 오를 만큼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한편 그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경우회 사무총장 재직시절에 당시 이균범 경우회장을 보좌하여 7년간의 소송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기흥골프장 문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술하에 5남매를 두고 있는 그는 자녀교육에도 성공한 警友로 꼽힌다. 장녀 (도경)는 대학교수(문학박사, 문학평론가)로, 차녀(수경)는 한국 노동연구원 소장(뉴욕 빙햄튼 대학 경제학 박사)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장남(대민)은 LG그룹에서 차장(조지 워싱턴 대학 졸)으로, 삼녀(우경)는 증권거래소 과장(이화여대 졸)으로, 차남(대준)은 미국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비롯, 5녀녀의 배우자들 역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활동중이다.

평소 1만원짜리 구두에 5천원 이상의 매식은 자제할 정도로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는 황 前 총장은 『이제 나 이 70 古稀를 넘긴 시점에서 다른 욕심은 없고 오로지 건강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섯 자녀 외에 경우회에도 자식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많은 경우자녀들에게受惠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관련 외국 입법례

	경찰 수사주체성 규정	검 · 경 관계 규정
독 일	- 형소법 제163조 제1항 경찰의 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해서는 안 될 모든 지시를 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모든 관서에 정보를 의뢰하거나 또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 검사의 수사 - 형소법 제160조 제1항 고발이나 그 밖의 수단에 의해 어떤 범죄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일게 되는 즉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형소법 제161조 1문 검사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문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관청과 공무원은 검사의 촉탁과 위임을 충족시킬 의무를 진다. - 형소법 제163조 제2항 1문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관청과 공무원은 그들의 조사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 법원조직법 제152조 제1항 검사의 수사관은 관할구역내의 검사의 지시와 그 상급검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를 진다. 제2항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이 규정이 적용될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할 권한을 가진다. ※ 대다수의 주 법규명령은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경찰공무원을 수사관으로 규정
프랑스	- 형소법 제14조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리지 않은 경우 형벌규정을 위반한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색출할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린 경우에 예심법원(수사판사)의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그 요구에 따른다. - 형소법 제17조 사법경찰관은 제14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다. 사법경찰관은 제75조에서 78조까지 규정된 조건하에서 예비수사를 개시 진행한다. ※ 검사의 수사 - 제41조 지방법원 검사장은 범죄를 발견하거나 소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사(수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방법원 검사장은 자신이 속한 법원의 관할 내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지휘한다.	- 형소법 제12조 사법경찰의 기능은 지점장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한다. - 형소법 제13조 사법경찰은 각 고등법원의 관할 내에서 고등법원 검사장의 감독과 고등법원 수사부의 통제를 받는다. - 형소법 제41조 지점장은 범죄를 발견하거나 소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하거나 하게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점장은 자신이 속한 법원의 관할 내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지휘한다. - 형소법 제54조 중죄·경죄 현행범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에 대해서 즉각 지점장에게 통보를 하고 범죄현장에 지체없이 임장하여 유용한 모든 확인절차를 밟는다. - 형소법 제75조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수사를 한다.
일 본	- 형소법 제189조 제2항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 ※ 검사의 수사 - 제41조(검찰관·검찰사무관의 수사) ①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형소법 제192조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형소법 제193조 제1항(일반적 지시권) 검찰관은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제2항 (일반적 지휘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제3항 (구체적 지휘권)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